# 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1-2호 | 2021년 3월 17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홍익표 | idp.theminjoo.kr

##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제2라운드: 폭넓고 촘촘한 지원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

고 승 연 연구위원 (사회복지학 박사)

- 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-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의 유형별 특징: 긴급 지원을 통한 '고용유지와 안정'에 총력
- 2020년 4차례 추경을 통해 총 14조원 투입, (재직자 지원)유럽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고용유지 및 안정에 총력
- (실업자 지원)기존 구직급여 제도 유지하면서 저소득 실업자 지원에 집중, <u>상대적으로 소극적인</u> 실업자 지원
- (유연근무 지원)법정상병지원은 없으나 유연근무 추가 지원은 주요국과 유사
- 지원대상 및 내용상의 특징: 넓은 사각지대와 지원의 형평성·현실성 문제
- 넓은 사각지대: <u>일자리 회복가능성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편적 대책</u> 미흡, <u>장기</u> <u>실업자와 급증한 비경제활동인구(구직단념자)</u>에 대한 관심 부족, 이로 인한 사각지대의 확대 와 취약계층의 소득공백기의 장기화 우려
- 지원의 형평성과 현실성: 상병 및 돌봄 등을 위한 <u>유연 근무의 개인적 편차에 대한 대책 미</u>흡, 정액지원의 형평성 문제, 청년 지원의 현실성 문제
- 향후 정책 방향: 폭넓고 촘촘한 일자리 지원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
- '수급자'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지원 금액의 현실성과 형평성 제고
- 사태의 장기화 대비, 장기 실업자,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역량 유지 및 확충 지원
- 비대면 부분의 <u>매출 증가 기업들과 상생형 직접일자리</u> 사업 추진
-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폭넓은 고용유지 방안 설계
- 직접 일자리 지원보다 청년 대상 전문교육 우선 실시
- I.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의 유형별 특징(주요국과 비교)
  - 우리나라는 2020년 4차례 추경을 통해 총 14조원 투입,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에 총력1)

- (고용유지 지원)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, 현장노사 밀착 지원, 기업지원 시 고용유지 조 건 부과 등 노사의 고용유지노력 최대한 지원
  - '20년 고용유지지원금 2조 3천억원 지급('19년 대비 34배로 증가)
- (생계안정 지원) 특고·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계안 정 지원(267만명, 3조원)
  - · 긴급고용안정지원금(211만명),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(18.5만명),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(8만명),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(특고 · 프리랜서, 무급휴직자 29만명),
- (일자리기회 확대) 약 155만개의 민간·공공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 층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회복력 유지

#### ○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'고용유지 지원'에 집중

- 대부분 국가들이 고용 유지와 실직 방지를 위해 기업 또는 고용주를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과 상병급여, 실업급여, 저소득층 소득지원, 각종 바우처 제공 등 개인과 가구에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직접지원 방식을 병행<sup>2)</sup>
- <u>특고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</u>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도 고용보험 적용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대응으로 임시적 집중 지원
  - ·미국, 핀란드, 프랑스 등은 실업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, 우리나라나 일본은 직접 현금 지원
- 고용유지를 위해 <u>기존의 휴업지원 제도를 보완·확대</u>한 유럽 국가들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확대 운영
- 우리나라는 <u>우선지원대상기업</u>, 특별고용지원업종, 집합제한·금지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 지원을 하고 있어 대상업종 종사자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

## ○ 미국은 실업자 지원에 집중, 많은 국가들도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·기간 연장·소득대체율 인상 등으로 실업자 지원 강화, 우리나라는 저소득 실업자 지원에 집중

- 상대적으로 노동 유연성이 높은 <u>미국은 고용유지보다 실업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넓고 두꺼</u> <u>운 실업자 지원</u> 실시
  - ·기존 실업수당에 600달러를 추가, 기존 수급기간보다 13주 연장하여 '20년 12월까지 총 39주 지급<sup>3)</sup>
- 오스트리아,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, 기간 연장 등으로 실업자 지원
- 우리나라는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<u>저소득 실업자 대상 생활안정자금</u> 지원,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지원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 대응

<sup>1)</sup> 고용노동부. (2021. 2. 3.).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.

<sup>2)</sup> 여유진, & 김성아. (2020). 코로나 19 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. *보건·복지 Issue & Focus, 382*, 1-12.

<sup>3)</sup> 이승우, 류미경, & 정경은. (2020. 4.13.). 코로나19 대응 해외 사례 분석: 민주노총정책 연구원.

## ○ 법정상병지원은 없으나 유연근무 기간 연장 또는 지원금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은 주 요국과 유사

- 미국(종업원 수 500명 미만 고용주는 긴급유급병가 의무화), 일본(자녀의 휴교 및 휴원에 따른 휴직 지원)에 비해 대책의 <u>강도는 미약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대상으로 한</u>유연근무 지원 강화
- 법정상병지원이 없어 개인별 고용상황에 전적으로 의존

#### 〈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유형별 주요국과 비교 〉

O 컨	국가	근로자 지원(직접지원)		고용주(사업장) 지원(간접지원)		ш
유형		금전 지원(소득지원)	기타	금전 지원	기타	비고
코로나19	우리 우리	-	_		-	_
		· 유급 병가	· 병가 기간 연장	·근로자 병가시 급여 지원 또는 세금 공제	-	· 중소규모 시업장
유연근무 지원 (돌봄, 재택근무)	워바	_	급지원 기간 및 인원 확대	·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(근로 시간 단축에 다른 임금 지원) ·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	-	특별고용지원업종, 우선지원대상기업, 집합제한 · 금지 업종, 특고 · 프리랜서는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
	주요국	· 유급 휴가	· 돌봄 휴가 조건 완화 · 휴가 기간 연장	·근로자 휴가시 급여 지원 또는 세금 공제	_	· 중소규모 시업장
(재직자) 고용유지 지원	워바	·(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 로그램)유급휴업·휴직수 당 지급	· 유급휴업 · 휴직 기간 연장	· (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)휴업·휴직수당 일부 지원 · 집합제한·금지 업종 고용 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· '고용유지자금융자' 신설 ·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	-	특별고용지원업종, 우선지원대상기업, 집합제한 · 금지 업종, 특고 · 프리랜서는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
	주요국	<ul> <li>한시적 해고(부분 실업, 일시 해고) 기간 중 임금 보전</li> <li>단축근무수당(조업단축지원제도) 증액</li> </ul>	용 대상 확대 ·지원 기간 연장	· 대출한도 확대, 금리 인하 · 고용유지(조정)지원금 · 한시적 해고기간 중 고용주 부담 임금/보험료 등 지원 · 고용주 부담 단축근로수당 사회보험료 보전	· 무담보 대출 · 한시적 해고	· 중소규모     시업장       · 정부명령에 의한     (부분) 휴업 시업장       · 큰 폭의 수입 감소       시업장
실업자 지원	워바	<ul> <li>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</li> <li>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</li> <li>저소득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</li> </ul>	· 구직급여 신청 단순화	·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충 ·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 · 청년 일경험 지원 · 중소 ·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설		_
	주요국	·실업급여액 증가	· 실업급여기간 연장 · 실업급여대상 확대	_	-	비정규직, 특고, 프리랜서, 자영업 자 등 추가
기타 (생계지원 등)	워바	<ul> <li>・특고 · 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</li> <li>・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</li> <li>・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</li> <li>・실업자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</li> <li>・ 코로나 특별 훈련수당 지급</li> <li>・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</li> </ul>	_	· 고용취약게층 긴급소득지원 ·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·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 확대 · 고용 ·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	_	_
	주요국	· 근로취약계층 소득 지원		·세금,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		

#### Ⅱ.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지원대상 및 내용상의 특징

#### (1) 넓은 사각지대

-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용취약계층 확대되고 있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도 비례 적으로 증가
  - 특별고용지원업종, 집합제한·금지 업종, 우선지원대상기업, 특고·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큰 특정 대상에 지원 집중되고 있으나 <u>사태의 장기화로 취약대상을 한정짓는</u> 것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키우는 역효과 야기

#### 〈 코로나19 고용취약계층의 유형과 지원 내용 〉

코로나19 고용대책의 사각지대 高← 고용상태의 회복가능성 → 低 코로나19로 근로시간 단축・ 高 • 비정규직 근로자 (7,426천명) 코로나19로 일시적인 타격을 실업상태의 비정규직 근로자 - 특고·프리랜서가 아닌 경우 입은 특수 업종 종사자 ⇒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집합 (임시·일용직, 특고, 프리랜서 등) - 저소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⇒특고,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 제한금지업종 집중 지원 - 근로시간이 감소한 경우 원금, 생계지원금 -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⇒저소득 실업자/근로자 생활안정자 고용구조의 금 지워 화되는성 • 장기 실업자. '쉬고있는' 비경제활동인 ⇒저소득 직업훈련 지원, 생계비 대부 구, 구직단념자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-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경우**(118천명)** 악화되어 실업·휴업상태에 비대면화 및 행정명령으로 사업기반 - 비경제활동 사유가 학업, 가사 등이 아닌 있는 임금근로자 약화 · 붕괴된 영세 자영업자 쉬고 있는 경우(2,374천 명) ⇒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(도·소매업, 식음료업 등) 低 - 실직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고용유지지워금 ⇒고용유지지원금 경우(구직단념자 605천명) ⇒영세사업장 임금 보조 ⇒사회보험료 지원 및 납부유예 등

- 주: '고용구조'의 회복가능성 코로나19로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거나 종사상지위(상용직-임시직-일용직 임금근로자, 고용원 있는/없는 고용주)가 변동한 경우,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
  - '고용상태'의 회복가능성 코로나19로 일시적 또는 무기한으로 취업자가 실업, 비경제활동, 구직포기상황 등의 고용상황으로 변동된 경우.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
- 주: 특별고용지원업종: 여행, 관광숙박, 관광운송, 공연전시('20.3.16.~'21.3.31.), 항공지상조업, 면세점, 공항버스, 전시·국제회의('20.4.27.~'21.3.31.)
  - 우선지원대상기업: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, 500인 이하 제조업, 300인 이하 보건업·건설업, 200인 이하 도소매업·숙박음식업 등(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)

#### ○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편적 관심 필요

- <u>비정규직 근로자 중 다수가 고용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상황</u>, 특고·프리랜서나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는 코로나19의 고용 대책에서도 제외4)

- '20년 8월,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7,426천 명(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) (이중 특고 ·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700천 명)
- 비상용 근로자의 36.8%(2020년 12월)가 코로나19로 실직 경험, 이 중 77.3%는 실업급여 비수급, 휴직 경험자 중 절반(59.3%)은 휴업수당 비수급
- 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94.7%, 비정규직의 경우 60.3%
-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일자리 기반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<u>지원은 일자리의 취약정도가 아니라</u> 소득기준(중위소득 60%, 2/3 수준)으로 선별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
  -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: 비정규직 55.3%, 정규직 17.5%(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 의 비율은 61.7%, 월급 500만원 이상 노동자의 비율은 13.7%)

## ○ 일자리 획복가능성이 낮은 장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(구직단념자)에 대한 관심 필요

- 코로나19 대응 실업자 지원은 저소득자 대상 생계지원뿐이며, 일반적인 실업자 지원은 기존 구직급여 제도 범위에서만 지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
- 더욱이 코로나19로 실업자 증가뿐만 아니라 <u>비경제활동인구 및 구직단념자가 크게 증가</u>, 포 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에 애로점으로 작용 가능
  - · '20년 비경제활동인구(1,725.5만명) 69.0만명 증가, 이중 '쉬었음' 인구는 전년대비 13.5% 증가한 2,374천 명, 구직단념자는 605천명으로 전년대비 13.6% 증가<sup>5)</sup>
-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경제활동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<u>경제활동인구로 재진입</u> 불가, 결국은 복지대상으로 전락 가능

## ○ 고용취약계층의 구직 가능성이 크게 감소되고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공백 기의 장기화 우려

- 지난해 3월 워크넷 구직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21.2%를 기록
- 워크넷 구직등록 후 3개월 이내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2019년 2월 32.8일에서 지난해 2월 34.8일, 2019년 3월 34.8일에서 지난해 3월 37.3일로 증가<sup>6)</sup>
- 대부분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,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까지 미취업 상태 지속 가능

<sup>4)</sup> 공공상생연대기금. (2021. 1. 18).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.('20년 4월·6월·9월·12월 4차례에 걸쳐 전국의 만 19~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)

<sup>5)</sup> 통계청. (2021. 1. 13.). '20.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.

<sup>6)</sup> 한국고용정보원. (2021. 1. 29.).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.

#### (2) 지원의 형평성과 현실성 문제

- 고용안정망 미비로 인한 특고·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 지원, 지원 성과는 의문
  - 고용안전망의 (대상) 범위와 깊이(임금대체율, 급여액)에 있어 주요국에 비해 취약, 특히 고용안전망에서 제외되었던 특고·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에는 한계
  -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기존 제도의 운영 방식을 완화 또는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'긴급 고용안정지원금'형태로 <u>대규모의 일시적으로 직접 지원 실시, 대</u> <u>책과 효율성과 효과 의문</u>

#### ○ 코로나19 관련 상병 및 돌봄 등을 위한 유연 근무의 편차

- <u>기업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복지 수준간 갭</u>이 커서 상병수당이나 유연 근무의 혜택 여부에 큰 편차 존재
-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유연 근무 지원은 기존에 유연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 제도가 미비된 취약한 근로조건 하에서 역차별 발생 가능

## ○ 청년 대상 다수의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나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조기 집행이 대부 분, 특히 사업체 일경험이나 채용지원 사업은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다소 회의적

-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
  - ·취업성공패키지 확대, 청년특별구직지원금, 중소·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충, 중견기업채용보조금 신설, 청년디지털일자리, 일경험 지원 확대,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
- 이중 사업체 일경험이나 채용지원 사업은 <u>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사업체에 부담, 일자리 유</u>지나 확대도 부정적
  - · 정부가 2020년 청년 디지털일자리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8000억 원을 투입, 일자리 11만 개를 계획하였으나 30% 이상 달성 미달(실행: 7만3천여 명, 2021년 1월 13일 현재)<sup>7)</sup>

#### ○ 소득 지원 금액의 형평성과 현실성 미흡

- <u>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정액 지원금(월 50만원 정도)</u>은 지급 유무에 대한 의미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적합성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
  - · '20년 3분기 1인 가구 월평균소득 302만9000원(통계청 가계동향조사)
- 임금의 일정비율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에 비해 형평성과 현실성 부족

<sup>7)</sup> 고용노동부 '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'

#### Ⅲ. 향후 정책 방향: 폭넓고 촘촘한 일자리 지원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

#### ○ 첫째, 코로나19에 대한 일시적 대책 마련이 아니라 고용안전망 혁신의 기회로 인식

-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구직급여 등 고용안전망의 유지력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어, <u>위</u> 기상황의 기간과 심각도에 따라 지원 금액·기간이 비례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유연성 필요
- 또한 현재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지원 중 하나인 상병수당의 경우, 필요성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<u>코로나19</u> 사태를 정책 실험의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여 우선적으로 저소득 및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정책 결단과 실행 필요
  - (오스트리아, 독일)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제정된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 자동 메커니즘 적 용, 집에서 일할 수 없는 격리된 직원을 병가로 간주<sup>8)</sup>
  - (덴마크, 노르웨이, 아일랜드, 영국)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 혜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
  - (캐나다, 뉴질랜드, 미국) 아프거나 격리 중인 근로자를 위한 위기 급여를 새로 도입
  - (벨기에, 프랑스) 집에서 일할 수 없는 격리자들이 임시 근로시간 단축(STW) 제도로 지원
  - (노르웨이) 노동시간 단축(휴업), 병가, 자녀 돌봄, 자가 격리 등 모든 경우에 급여 및 수당에 관한 권리를 보장

#### ○ 둘째, 수급자 입장에서 적절한 규모와 방법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검토 필요

-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출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<sup>9)</sup>으로, 대상자의 <u>식역(threshold)</u> 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지원 확대 필요
  - (프랑스) 최저임금 4.5배 한도로 부분 실업(휴업) 지급액(임금의 70%수준) 100% 보상
  - (독일) 단축근무제로 소득 50%이상 감소한 경우 임금대체율 80~87%까지 단축근로수당 증액
  - (스페인) 일시해고시 임금총액의 70%까지 실업급여로 지급
  - (벨기에) 실업 급여를 평균 임금의 70%로 인상
  - (영국) '임시휴가 노동자'로 지정하고 통지하게 되면, 정부는 최대 2,500파운드 한도로 급여의 80%를 지급하며, 3개월 운영 후 연장 가능
  - (덴마크)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할 경우'일시해고'가 아닌'고용 유지'상태로 보고 실업급 여가 아닌 평상시 임금을 그대로 지급
- 정해진 기간 동안 일괄 지급보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<u>체감(遞減) 또는 체증(遞增), 일시 지</u>원 등 대상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의 유연성 보완

<sup>8)</sup> 이하 주요국 사례는 이승우, 류미경, & 정경은. (2020. 4.13.). 코로나19 대응 해외 사례 분석: 민주노총정책 연구원. 참고

<sup>9)</sup> GDP 대비 정부 지출규모(2020년 6월 12일까지): 미국 12.3%, 일본 11.3%, 독일 9.4%, 호주 8.8%, 영국 6.2%, 캐나 다 5.6%, 이탈리아 3.5%, 한국 3.1% (자료: 이기쁨. (2020).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가별 정책대응과 고용지표 현황. 노동리뷰, 43-54. )

- (노르웨이) 최대 26주까지 노동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휴업 중 20일 동안 은 임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를 수령
- (네덜란드) 조업단축지원금 지급 기준: 매출 50% 손실시에는 임금의 45%, 매출 25% 손실시에는 임금의 22.5%를 지원하되, 신청한 매출 손실에 따라 계산된 고용보험청은 지급액의 80%를 선지급 후 추후 정산(우리나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괄 적용)

## ○ 셋째, 청년일자리 지원은 포스트코로나 대비, 민관협력을 통한 전문화된 직업훈련을 우선 추진

-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기업체 일경험을 통한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으나, 현재의 경 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일자리 지속성 등의 성과가 상당히 회의적
- <u>민관협력을 통한 좀더 전문화된 신기술 직업훈련 프로그램</u>10)을 기획 운영, 뉴딜사업 참여 등 실질적인 취업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 미래지향적 투자가 바람직

## ○ 넷째,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하는 좀더 확대된 고용유지 방안의 설계

- 최근 체감실업률(2020년 13.6%, 청년 25.1%) 증가는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, 다양한 근로상황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<sup>11)</sup>
-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해 주요국들이 STW(short-time work: 임시 근로시간 단축) 제도를 비정규직까지 확대ㆍ지원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
  - (네덜란드) 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의 조업단축제도(WTV)를 확대하여 신 규로 임시 긴급 고용유지지원제도(NOW) 시행, 이를 통해 호출형(on-call), 임시직(temporary workers)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유연한 근로자(flex workers)들의 고용 보호<sup>12)</sup>
  - (독일) 기존 적용대상(정규직, 기간제 비정규직)만이 아니라 원래 제도에서 제외된 파견노동자 까지 확대 적용-단축근무제(Kurzarbeit)`도입 요건 완화
  - (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일본) STW(short-time work) 제도로 정규직 종사자만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임시직, 파견직, 특정범주의 자영업자도 포함하도록 가입 자격 범위확대(STW 제도가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악화시키는 위험 제거)
  - (스페인) 임시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최소 기여기간 폐지. 수습기간 동안 실 직한 근로자와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받고 자발적으로 기존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접근성 제공

<sup>10)</sup> 중앙일보, 이곳 거치면 기업이 믿고 뽑는다는데…비결은 실전형(2021.01.26.) - 취업 춘궁기에 SSAFY(삼성청년SW아카데미) 교육생들 대기업·금융기관, 채용 입도선매 교육생 "싸피만 말해도 합격 위력" 현장 실전형 인재로 양성한 때문...

<sup>11)</sup> 체감(확장)실업률: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(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, 추가취업을 희망하고,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)와 잠재경제활동인구(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희망 하고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지만,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)를 고려한 실업률

<sup>12)</sup> 김현경, & 김기태. (2020). 유연안정성 모델 국가들의 코로나 19 대응 노동정책: 덴마크와 네덜란드. 국제사회보장리

#### ○ 다섯째, 포스트코로나 대비 장기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역량 확충 지원

- 장기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양극화된 일자리의 취약한 상황, <u>개인적 및 국가</u> 적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가장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집단으로 인식
- 관련된 정부의 주력 사업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이 큰 폭의 예산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,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접근가능성에 다소 제한
  - · 국민내일배움카드 '21년 예산 1084억 원(전년대비 102.2%), 이중 64.8%가 '디지털 핵심 실무인 재 양성훈련'에 할당되었으며 일반직종 훈련 예산은 20% 감소
- 분야에 상관없이 <u>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 선택의 폭</u>을 넓히고 동시에 미래 일자리 수요 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의 전문성과 실질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 필요
  - (프랑스) 직업학교의 핵심 교육과정 및 전문자격취득 교육과정을 3개월 동안 원격으로 무료 제공
  - (일본)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돌봄 인력확보를 위해, 실업·휴업자가 돌봄 관련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교육비와 생활비 등과 20만엔 (약 210만원)을 대출 지원. 자격증 취득 후 고령자 돌봄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등에서 2년 간 취업하면 상환을 면제('21년 최소 2만2,000명 지원 목표)<sup>13)</sup>
- 또한 <u>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(자기부담금 완화 등)</u>과 <u>개별적인 학습 상담</u> 및 적극적인 홍보 필요

## ○ 여섯째, 코로나19로 매출이 증가한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상생형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

- <u>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</u>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<u>일자리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최선의</u> 방안으로, 운영 방식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일자리 개발 추진
-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성과에서도 양극화 발생, 특히 <u>비대면 소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관</u> 런 기업<sup>14)</sup>의 성과 급증, 이들 기업과 제휴를 통해 상생형 일자리 개발
- 시간제를 포함하여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<u>정부의 직접일자리 예산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</u> 하는 형태로 중장기 운영

뷰, 13, 36-46.

<sup>13)</sup> 한국일보, (2021. 1. 10) "돌봄 산업으로 전직 어떠세요?" 日, 코로나 실업자에 무료 직업교육 지원

<sup>14) &#</sup>x27;20년 전년('19년)대비 매출액 증가율: 쿠팡 41%, 카카오 35%, 엔씨소프트 31.1%, 네이버 21.8%

## [부록]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

## 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〉

-	분	내 용	시기
고용악화 지역별맞춤형 고용안정지원	「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시업」	<ul> <li>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(기업), 근로자·구직자 대상 기업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 → 예산 지원</li> </ul>	1차 추경
 소상공인 경영부담	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	- 저임금 근로자(약 230만명)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조(인당 추가 7만원, 4개월)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	1차 추경
완화 및	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	-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	1차 추경
근로자 고용안정지원	고용 · 산재보험 료 납부유예	- '21.1~3월 영세사업장·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·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+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	코로나 3차 확산대응
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	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	<ul> <li>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,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</li> <li>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전제로 폐지한 '구직촉진수당'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</li> <li>(취업성공패키지) ' 21년 1/4분기에 청년 3.9만명 대상 상담 → 직업능력 향상 → 취업알선 등</li> </ul>	<u>1</u> 차
	청년추가고용장 려금 확충	- 올해 목표인원 29만명(신규 9만+기존 20만)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	
	청년특별구직지 원금 지원	-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·연기,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(1회 50만원) 지원	4차 추경
	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(고용유지지원금)	<ul> <li>유급휴업·휴직 인원 확대, '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* '(최대 월50만원×3개월) 신설 등 지원대상 87만명 확대</li> <li>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휴업·휴직수당의 90%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9월말까지 3개월 연장, 7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</li> <li>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 180일을 소진한 경우, 지원기간을 3개월 간 연장하고 월 50만원(총 150만원)을 정액 지원</li> <li>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(최대 180일→240일)하는 등 고용유지</li> </ul>	
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	집합제한 · 금지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	지원인원 24만명 확대  - 집합제한·금지 업종 사업주가 경영 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업·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, 휴업수당 등의 최대 90%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	추경 코로나 3차 확산대응
	고용유지자금융 자 신설	<ul> <li>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 신설(고용유 지지원금 연계)</li> </ul>	3차 추경
	고용안정 협약 지원금	<ul> <li>노사 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, 최대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(50%) 지원</li> <li>(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)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간 임금감소 합의 시,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 말까지 계속 시행</li> </ul>	3차 추경 코로나 3차 확산대응
	특고 ·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	- (1차) 소득·매출이 감소한 특고·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 114만명 대상으로 '긴급 고용안정 지원금(월 50만원 × 3개월)'총 150만원 지원 - (2차)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·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(1개월) 추가 지원 - 소득이 감소한 특고·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 150만원(50만원x3개월) 지원	
그유이저마	긴급고용안정지 원금	- (3차)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·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~100만원을 지원	코로나 3차 확산대응
고용안전망 사각지대	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	-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,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	코로나 3차
추가 지원	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	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등 11만명 취약계층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- 지자체와 협조하여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「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」을 1인당 100만원 지원 -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.1만명 지원	확산대응 4차 추경
	소득안정자금	-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 예정	코로나 3차 확산대응

	Т		0.71			
	구직급여 규모 확대	-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 확대	3차 추경			
		-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,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 응하여 3만명분 추가 지원	4차 추경			
	생활안정자금 지원	- 의료비, 자녀학자금,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(1인당 2→3천만원) 및 지원인원 2만명 확대	추경			
		- 특고,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해 연 1.5%로 최대 2천만원까지 생계비, 의료비, 자녀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	3차			
		-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종사자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규 지원	확산대응			
실업자 등		-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(월 50만원 x 2개월) 지원	T'6			
취약계층의 생계·재취	코로나 특별 훈련수당 지급	- 실업자·무급휴직자 등 12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추가 지원(특별 훈련수당)	3차 추경			
업 지원		<ul> <li>무급휴직 기간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매월 30만원(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) 추가 지급하여 휴직 장기화에 따른 직무능력 저하 보완 및 생활안정 도모</li> <li>중장년층 대상 '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'지급: 실업자, 무급휴직자(무급휴직지원금 180일 수 급완료자 중 90일 연장 지원 중인 자)가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강화</li> </ul>	코로나			
		-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, 특고 등으로 확대	3차 추경			
	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	- 비정규직 근로자, 전직 실업자, 무급휴직자, 특고, 폐업·휴업 중인 자영업자가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,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, 월 단위 200만원(1인당 총2,000만원) 한도로 생계비 대부 - 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, 특별재난지역 거주 훈련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받을 수 있고, 대부한도도 월 300만원(1인당 총 3,000만원)까지 가능	코로나 3차			
	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	-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(컨텐츠 기획,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 지원(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)) 확대	3차 추경			
		-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인원 5만명 중 1.25만명을 '21년 1분기 중에 채용 완료할 계획	코로나 3차 확산대응			
청년 등	청년 일경험 지원	- 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 부여 시 6개월 간 인건비 지원(5만명, 월 최대 80만원)				
직접일자리 창출 지원	중소 ·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설	-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5만명 분 중소·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설	3차 추경			
	직접일자리 조기 채용	- 민간의 채용여력 위축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,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 참여 목표인원 104만명 중 50만명을 2021년 1월 이내에 조기 채용	코로나 3차 확산대응			
		- 비대면·디지털 일자리 3.7만개도 '21년 1월 바로 채용 - (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) 지역별 컨소시엄*이 30~40대 구직자 대상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				
		H	3차 확산대응			
	- '남녀고용평등법 개정('20.9.8)'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(한부모는 10→25일), 이에 따라 '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'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					
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	- 가정 내 자녀독본 화성하를 위해 그로시가 다춘 제도를 도입하고 그로자 필요에 따라 그로시가 다추을 허용해					
	- 유연근무 2만명 추가 지원					
필수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확대	- 유연근무 2만명 추가 지원  -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노동자(보건·의료, 돌봄, 택배·배달, 환경미화 등 사회기능 유지 필수분야 종사자)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44개 근로자건강센터 인력 및 장비 확충  - 택배 등 고위험 직종 1.5만명에 대해 건강진단 비용지원으로 검진실시를 유도하고, 혈압·혈당 등 뇌심혈관질환화(과로사) 위험지표에 이상이 있는 고위험군 4천명을 선별하여 심층 건강진단 및 전문의의 주기적 진찰 등을 통해 과로사 예방 계획					
T. 000011 -	101 EH +74	내용 미 그리니요 3된 회사에 대용 마추워 피테지의 대한 중 그윽고려 내용 져기/그의				

주: 2020년 고용노동부 추경 내용 및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고용관련 내용 정리(고용노동부 관련 2차 추경은 없었음).

자료: 1차추경-고용노동부. (2020. 3. 18).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.

3차추경- 고용노동부. (2020. 7. 3).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.

4차추경- 고용노동부, (2020. 9. 23.).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.

코로나 3차 확산대응- 고용노동부. (2020.12.29).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.

관계부처합동. (2020. 12. 29.).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.